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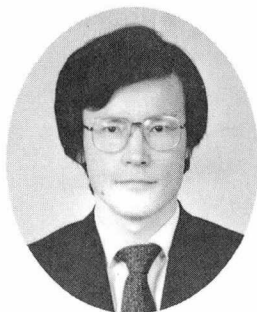
피보험이익의 귀속

1. 사고개요

1982년 11월 29일 인천시 남구 송의동 소재의 4층건물(지하포함)내에 수용하고 있던 동 건물주인 H소유의 각종 내부집기비품 및 시설물을 보험목적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1982년 11월 29일부터 1987년 11월 29일 까지, 보험가입금액 1억원 등을 보험조건으로 하는 장기화재 보험계약이 위 H와 D보험회사 사이에 체결되었다. 그런데 1986년 2월 21일 18시경, H소유의 위 건물지하층의 디스코클럽(신청의 S가 임차사용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동 디스코클럽내에 수용된 내부시설 및 집기품이 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화재로 소실된 인터폰, 에어컨 등 집기비품은 위 H의 소유물로 인정하여 손해액을 산정,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내부시설은 동 지하실의 임차인인 신청의 S가 시설한 것이라 하여 손해사정에서 제외하자 신청인 H가 내부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여 분쟁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당사자주장



이 순 관

〈한국보험공사 손보심의부〉

신청인 H는 건물의 지하층을 신청의 S에게 임대할 당시 신청인 소유의 조명시설, 벽시설물, 카페트 등 내부시설물을 그대로 임대하였던 것이고 동 시설물이 신청인 소유라는 사실은 임차인 S의 확인서 및 공증각서에 의하여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동 시설물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 D사에서는 신청인 소유건물의 지하층 임차인 S가 1985년 1월 12일 신청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거해 지하실을 임차한 후 기존의 내부시설을 철거하고 재시설한 후 내부시설에 대하여 신청의 K사와 일반화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85

년 2월 26일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해당보험금을 임차인 S가 수령하고 내부시설을 복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와 K사간에 체결된 보험계약이 만료된 후인 1986년 2월 21일에 또다시 화재사고가 발생하자 신청인(임대인)과 임차인 S가 쌍방합의하여 공증각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이 지하실내부시설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내부시설에 대한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3. 판정내용

본 건 장기화재보험분쟁을 심의한 분쟁심의위원회는 화재사고로 소실된 지하실(성인디스코클럽)의 내부시설이 신청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판정 기각하였다.

우선 각종 증거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이 사건화재사고로 소실된 성인디스코클럽의 내부시설은 신청의 S가 신청인으로 부터 동건물의 지하층을 임차하여 동장소에서 성인디스코클럽을 경영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배치되는 신청인제출의 확인서 등은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나아가 이재사정보고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성인디스코클럽의 내부시설은 화재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이 7천여만원에 이르고 있고, 위 건물지하층의 전세보증금은 2천만원에 불과한바 사회통념상 신청인이 전세보증금 2천만원을 받기 위하여 위 건물지하층에 7천만원이상의 내부시설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이 화재사고로 소실된 성인디스코클럽 내부시설이 신청인의 소유라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것이다.

4. 후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계약은 손해의 실손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이기 때문에 보험자가 구체적으로 우연한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지급 의무부담의 전제로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어떠한 이익, 다시 말하면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생기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지 않거나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받는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통상 이를 피보험이익이라 부르며,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분쟁의 쟁점이 되고 있는 지하실내부시설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신청인이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으면, 즉 동 내부시설의 소유권자이면 피신청인은 보상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동 내부시설이 임차인 S의 소유라면 피보험이익이 없

어 피신청인은 보상책임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본 건과 같은 디스코클럽의 내부시설에 관하여는 첫째, 임대인이 디스코클럽영업을 위한 제반시설을 하여 놓고 임대하는 경우 둘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체결 후 임차인의 비용으로 디스코클럽운영에 적합하도록 내부시설을 하거나, 임대인의 승인하에 임차물을 개축 또는 개조하는 경우 셋째, 구임차인이 이미 내부시설을 하여 놓은 것을 신임차인이 전임차인에게 권리금조로 상당금액을 지급하고 인수하는 경우 등 건물임대차계약에 따른 내부시설물설치관행의 형태가 다양하고, 또한 본 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해서도 위와같은 임대차계약 형태중 어느것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위 지하실시설물의 소유가 과연 누구의 소유에 속하느냐의 문제는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는 사실관계확정의 문제로서 제출된 증거자료나 제반상황 등을 참작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다.

우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청약서나 화재보험증권을 보면 보험의 목적물을 신청인 소유의 지하 및 지상 4층건물 전체의 각종 내부집기비품 및 시설 일체로 규정하고 있어 일응 외관상으로는 디스코클럽 내부시설물에 대하여도 신청인의 소유물로서 보험가입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

으나, 원목디자인업소를 경영하는 시공업자 H의 확인서에 의해 1985년 1월 중순경 임차인이 지하실의 기존내부시설을 철거하고 내부수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동 수리 후 화재사고로 동시설물이 소실되자 임차인이 동시설물의 소유자로 인정되어 직접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신청인이 제출한 공증각서는 본 건 화재사고 후 임대인이 내부시설물은 신청인의 소유라는 내용으로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에 응하였을 뿐이라고 임차인이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 공증각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실을 종합하여 본 건 화재사고로 소실된 내부시설물은 신청인 소유가 아닌 임차인 소유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본 건과 같이 임대차관계가 존재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그 내부시설물에 대한 소유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적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므로 청약서 작성시나 보험증권 발급시 보험의 목적을 건물내의 시설물 일체 등으로 단순히 추상적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소유관계를 분명히 하고 보험목적의 수용장소나 보험목적물을 구체적으로 분명히 하면 이와 유사한 보험분쟁은 해소되리라 생각한다. ㉞